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4일, 김윤의원 등 2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의원)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뽕뽕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뽕뽕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뽕뽕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현재 응급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최종치료, 최종치료 필요 질환군 및 해당 질환군별 처치·시술·수술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종치료율과 응급의료수가와의 연동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있어 응급환자의 수용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의 응급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개정안에 따른 응급의료 체계 구축 전반의

근거가 되는 응급의료진료권 개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응급의료진료권을 새로이 설정·운영함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에 의한 응급의료 관련 권역·지역의 설정과 운영 현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거부 등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범위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기술적·전문적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의 경우, 응급실 가용 상황의 파악 및 응급환자의 신속·정확한 이송과 전원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이송·전원 관련기관과의 정보의 균질성을 유지함으로써 기관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법 제48조의2에 따른 응급환자 등 이송자의 ‘수용능력 확인 등’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환자 상태 등의 정보 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다 적절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 지원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른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기관 당직체계의 경우, 응급의료의 배후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수용·치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응급의료기관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당직 전문의등 배치·운영 기준 및 시행시기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응급의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이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책임을 환자측이 지게 되는 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및 의료사고 형사 특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